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세무2과	7

(2016. 2. 1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
[전문위원 김 은 모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안 건 명

○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○ 제출일자 : 2016년 1월 15일(금)

○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○ 2016년 1월 21일(목)

4. 관계법규

○「지방재정법」 제8조(출납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)

○「지방세기본법」 제138조(포상금 지급)

○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」

[검토보고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< 개정이유 >

「지방재정법」 개정으로 회계 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을 축소 조정하고,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,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함.

< 주요내용 >

가. 「지방재정법」에 의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 2월 단축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 축소 조정

나.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·이용 제한을 반영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'주민등록번호'를 '생년월일'로 변경

다.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정비 및 미비점 보완

[검토의견]

○ 본 조례안은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다음해 2월 28일까지에서 부과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단축됨에 따라 우리 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도 2개월 단축하고,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며, 그 밖에 조례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가.「지방재정법」에 의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되어 포상금 지급대상을 축소 조정함(안 제2조)

【포상금 지급대상 축소 조정】

- 제2조(지급대상) : 지난년도 체납액 => 지난 연도 체납액(부과 당해 연도 종료일(12월 31일까지)로부터 2월 미경과분 제외)

【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 변경】

○ 출납폐쇄기한 2개월 단축

- 종 전 :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
- 변 경 : 부과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

○ 당해 연도

- 현행 : 회계연도 끝난 후 2월(1.1 ~ 익년 2.28)까지 당해 연도
- 개정 :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(1.1.~12.31.)까지 당해 연도

나.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문정비 및 미비점 보완

- 제2조제3항제1호 :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=>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으로 조문을 변경함
- 제3조(지급기준)제5호 : 미신고자 점용료 부과 시 포상금 지급기준을 '부과액'에서 '징수액'으로 변경하여 상위법인「지방재정법」제7조의 용어의 표현과 일치시켜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였음
- 제3조(지급기준)제6호(탈루세액) :

1) 지방세기본법 제138조(포상금 지급)내용 과 우리 구 조례 제3조(지급기준) 제6호(탈루세액 등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 제공 시 지급기준)내용이 중복되어 상위법령에 따라 우리 구 중복조문을 삭제하였고

- 2) 제7조(지급)제2항 내용 중 제5호 및 제6호 => 우리 구 중복조문 삭제로 제6호를 삭제함

다.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 조례 내용 정비(별지 제2호서식)

- 법령상 근거 없는 현행 조례의 별지 제2호서식 「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(포상금 지급대상)」의 납세의무자 '주민등록번호'를 '생년월일'로 변경함

○ 동(同) 조례안은 2015.11.26.~12.16.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은 없으며, 또한 상위법인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 28일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2개월이 단축되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을 축소 조정하였고, 「지방세기본법」 등 타 관련법의 저촉여부 검토 결과 중복되는 조례 표현은 혼란방지를 위해 우리 구 조례 조문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에 적합하게 우리 구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고,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불명확한 조문 및 잘못 표현된 내용이나 우리말로 순화할 필요가 있는 조례문구는 법제처의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등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 계 법 령

지방재정법

〔시행 2016.1.1.〕〔법률 제13638호, 2015.12.29., 일부개정〕

제8조(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. 다만,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,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.

②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·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.

지방세기본법

〔시행 2016.1.1.〕〔법률 제13635호, 2015.12.29., 일부개정〕

제138조(포상금의 지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·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
2.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
3.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
4.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
5.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
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, 부당하게 환급·감면받은 세액,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③ 제1항제1호에 따른 "중요한 자료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.

1.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·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, 거래일 또는 거

래기간, 거래품목,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(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·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자료등"이라 한다)

2.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

3.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·감면받은 수법, 내용,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

④ 제1항제2호에 따른 "은닉재산"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, 예금, 주식,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·무형의 재산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.

1. 제91조의7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

2.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

3.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.

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, 지급 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,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, 지급기준,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(有價物)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.

개인정보 보호법

〔시행 2016.1.1.〕〔법률 제13423호, 2015.7.24., 일부개정〕

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

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, 계획의 수립,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·지원할 수 있다.